
Ⅲ

지급결제제도 감시 및 국내외 협력 강화

1.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
2. 국내외 지급결제 관련 논의 동향

31

36

1. 국내 금융시장인프라¹⁾의 안전성 및 복원력 제고

-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및 개선 권고
-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제도 개선 조치
-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정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및 개선 권고²⁾

한국은행은 2023년에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를 완료했다.

(한은금융망)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24개 원칙 중 거액결제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18개 원칙과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사이버복원력 평가지침」 등을 기준으로 한은금융망³⁾을 평가했다. 최근 해외 지급결제시스템, 금융회사 등의 전산장애 발생⁴⁾ 등을 고려하여 운영의 신뢰성 및 업무 지속성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

해 IT 보안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평가 결과, 한은금융망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운영리스크 관리 등 일부 업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 업무지속계획」의 수행능력 향상, 취약점 파악 등을 위해 물적재해와 인적재해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업무지속계획에 따른 모의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재해 수준을 반영하여 대체근무인력 투입 훈련의 참가직원 선정방식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한은금융망의 주전산센터가 사고, 장애 등으로 운영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긴급 상황 발생 시 복구시간 최소화 등을 위해 재해 복구센터의 IT 전문인력 확보 및 전력 공급체계 이원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⁵⁾인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

1)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2> '금융시장인프라'를 참조하기 바란다.

2)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5>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를 참조하기 바란다.

3) 금융기관 간 콜거래에 따른 자금결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 증권 및 외환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등을 수행하는 결제시스템으로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한다.

4) 해외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 장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1>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 장애 발생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5) 금융결제원은 개별 소액지급시스템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 확인·증계,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충 설명 3> '한은금융망과 소액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동망, 전자금융공동망과 최근 이용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미국 실리컨밸리은행 파산의 주요 배경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보편화에 따른 디지털뱅크런이 부각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PFMI를 대부분 준수하고 있었으나 운영리스크 관리 강화, 투명성 제고 등 일부 업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픈뱅킹공동망의 접근요건 강화를 위해 현재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신청기관 승인 기준에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승인 요건을 마련하고 승인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재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사이버복원력 성숙도 평가 모형(cyber resilience maturity assessment model)⁶⁾을 구축·활용하여 사이버복원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표 III-1. 2023년 중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실시 현황

평가대상	주요 개선권고내용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 인적재해에 대비한 대체근무인력 투입훈련의 참가직원 선정방식 세분화 · 재해복구센터의 IT전문인력 확보 및 전력 공급체계 이원화 등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공동망	· 사이버복원력 대응체계의 평가 방식과 목표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이버복원력 성숙도 평가 모형 도입 등 ·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신청기관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승인 요건 마련, 정기 재심사 절차 도입

자료: 한국은행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2023년 중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여 3개 국내은행에 대해 일중유동성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IT 운영리스크 관리, 정보보호 관리 등 지급결제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1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금이체업무 수행상황, 결제유동성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표 III-2. 2023년 중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지급결제 부문 공동검사 실시 현황

대상 기관	검사기간	주요 검사내용
신한은행	3.29~3.31 4.10~4.13 (7영업일)	· 일중유동성 관리 ·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수협은행	8.29~8.31 (3영업일)	· 지급결제 관련 규정 준수 · IT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하나은행	11.28~11.30 (3영업일)	· 정보보호 관리체계 · 장애사고 대응 및 비상대응체계 등
유안타 증권	6.19~7.4 (12영업일)	· 자금이체업무 수행상황 · 결제유동성 관리실태 등

자료: 한국은행

공동검사 결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한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 마련 등 유동성 관리체계가 대체로 적절했으며, IT 운영리스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적절히 수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자금이체 수행절차 및 장애 사고 발생 시 대외기관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차액결제 대행업무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결제유동성 관리체계를 일부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6) IT 장애, 해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복원력 관리체계(인력, 조직, 예산, IT 기술, 프로세스 등)를 발전 단계별로 평가하는 모형이다.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제도 개선 조치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2023년 5월 ‘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⁷⁾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대출이동 시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했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의 대환을 신청하면 동 시스템은 참가기관 간 상환정보 조회 및 상환처리를 중계한다. 대상 대출은 2023년 5월 최초 서비스 개시 시 개인신용대출로 한정되었으나, 2024년 1월에는 아파트담보대출 및 전세대출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⁸⁾를 위해 2023년 12월 금융권 공동의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했다. 참가기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촬영 사진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환경 변화 및 시장참가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시장 시스템(EXTURE 3.0)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로 2023년 1월 25일 매매체결 및 정보분배 시스템을 가동했다. 동 시스템은 거래처리 속도 향상, 일일 호가수량 처리용량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 성능을 개선했고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관련 위험관리장치 등을 마련했다. 10월 4일에는 2단계로 장내·외, 일반상품 등 시장별 청산결제시스템을 차세대 시장시스템 기반 기술을 적용한 청산결제 플랫폼으로 통합했고 실시간 리스크 산출, 시뮬레이션 기능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23년 10월 대체거래소 설립 준비법인인 넥스트레이드⁹⁾와 시장운영체계, 시장감시 및 청산업무 수행 관련 정보교환 등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023년 8월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국채·통안채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International Center Securities Depository)¹⁰⁾인 유로클리어(Euroclear) 및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과 국제통합계좌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국제통합계좌는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보관기관 또는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동 계좌를 통해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

7) 금융결제원은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권 경쟁 촉진 등을 위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 손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2023.5월), 「오늘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2024.1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8) 금융위원회의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2022.9월)의 세부 추진계획 중 하나이다.

9) 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19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 자본시장법(제8조의2 제5항)에 따르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0) 주식, 채권 등 증권에 대한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시장인프라로서 각국의 중앙예탁기관(증권) 및 환거래은행(대금)에 자신의 고객을 위한 통합계좌를 개설한 후 고객들에게 증권보관, 배당 및 원리금 처리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다.

할 수 있게 되어 거래 및 사후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연계 운영시스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 상반기 중 국제통합계좌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¹¹⁾

또한 2023년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¹²⁾에 앞서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¹³⁾ 및 개인 여권번호를 외국인 투자자 식별정보로 추가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은 2023년 중 개인투자용 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세부 수행방안 수립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정부는 국채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¹⁴⁾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자금 취합·국고납입, 등록발행, 원리금 상환 및 등록말소,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부 국가의 증권 결제주기 단축¹⁵⁾에 대비하여 국내증권사들과 외화증권 결제 업무시간 조정 및 자동화 등을 추진

함으로써 국내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비한 감시체계 정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활동 지속)

빅테크·핀테크 기업은 모바일기기를 통한 높은 접근성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간편송금, 간편지급 부문 등에서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¹⁶⁾의 금융업 진출 및 지급서비스 확장에 대해서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시각과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심화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IT 플랫폼과 금융의 결합으로 금융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빅테크 지급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고 이들 기업으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될 경우 빅테크 기업이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빅테크 지급서비스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빅테크 기업을 감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 실행 체계 등에 관해 검토할 계획이다.

11)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유로클리어(Euroclear)와 국제통합계좌 구축·운영 계약 체결」(2023.8월), 「한국예탁결제원,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과 국제통합계좌 구축·운영 계약 체결」(2023.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그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5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법인식별기호 등으로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2023.12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13) 법인식별기호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금융거래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다.

14)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2023.9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2월 증거금 부담 완화와 결제리스크 축소 등을 위하여 주식 및 회사채의 결제주기를 종전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2>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확대 동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급결제시스템 평가방식 다변화)

한국은행은 그간의 지급결제시스템 평가 성과, 지급결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방식 변경을 추진했다.¹⁷⁾

먼저 2024년 4월 1일 기존 2년¹⁸⁾이었던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주기를 3년으로 확대했다. 2004년부터 19년간 이루어진 정기평가를 통해 주요 개선필요사항이 대부분 권고된 데다 지급결제시스템 특성상 제도나 운영환경 변화가 빈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정기평가주기의 실익을 따져보고 운영기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와 함께 평가 형태 및 대상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취약점 파악 및 개선권고의 적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 및 중요한 제도 변경, IT 시스템 관련 운영리스크 등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정기평가 주기 도래 전 수시평가 활성화를 통해 신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¹⁹⁾ 또한 기타지급결제시스템²⁰⁾ 중 중요성이 있는 일부 시스템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7)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제38조는 한국은행이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주기 변경은 2006년 8월 한 차례 이루어졌다(1년 → 2년).

19) 예컨대, 최근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사이버복원력 제고에 대하여 관련 PFMI 평가 원칙 준수 상황을 전체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신속히 동시에 점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Ⅲ-4> '사이버복원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외화자금이체시스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 지급결제시스템, 위안화 청산시스템, BC카드결제시스템 등이 있다.

2. 국내외 지급결제 관련 논의 동향

- 지급결제 감시 관련 국제 논의 참여 및 역내국 간 협력 강화
- 국내 가상자산 규제 관련 논의 참여

지급결제 감시 관련 국제 논의 참여 및 역내국 간 협력 강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최신 글로벌 이슈를 조사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2023년 중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우선 국가 간 지급서비스와 관련해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연장방안,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관련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데이터 구조 설계, 국가 간 지급시스템 연계방안 등 세부 과제에 대한 검토보고서²¹⁾를 발표했다. 또한 그동안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높은 수수료와 느린 처리속도의 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G20 국가 간 지급 로드맵 개선 지표를 마련²²⁾했다. BIS CPMI는 G20

회원국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함께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간 지급 로드맵 개선 목표 달성 현황을 동 개선 지표에 따라 매년 점검하고 이행 현황을 보고서를 통해 대외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동 보고서는 데이터 갭 및 편제방법의 어려움 등으로 개별 회원국이 아닌 권역별²³⁾로 2023년 10월에 발표되었는데 향후 데이터 확충, 편제방법 보완 등이 이루어지면 개별 회원국별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간 지급 현황 파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관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2023년 6월 국내은행 및 소액해외송금업체, 카드사 등이 참여하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TF」를 신설하여 국가 간 지급 로드맵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해외중앙은행 등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글로벌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 협의회를 토대로 실무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BIS CPMI는 FSB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감독 및 감시 표준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21) BIS CPMI가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2023년도에 발표한 자료는 「Operational and technical considerations for extending and aligning payment system operating hours for cross-border payments」(2023.2월), 「Harmonised ISO 20022 data requirements for enhancing cross-border payments」(2023.3월, 10월), 「Linking fast payment systems across borders: considerations for governance and oversight」(2023.10월) 등이 있다.

22)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2년 11월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 이행과 관련하여 3개 부문(금융기관 간 지급, 개인·기업 간 지급, 이주노동자 국외 송금)에 대해 4개 개선항목(비용, 속도, 접근성, 투명성)별로 평가지표와 동 지표 산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안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G20 회원국은 2027년까지 상기 3개 부문에서 비용을 송금액의 1% 이하로 낮추고 대부분(75%)의 지급이 1시간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체계와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3) East Asia & Pacific, Europe & Central Asia,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Middle East & North Africa(MENA), South Asia, Sub-Saharan Africa 등 6개 권역이다.

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국내외 잠재적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응하면서도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7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최종 권고안」²⁴⁾을 발표했다. 동 권고안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각국의 대비, 국제협력 및 정보 공유,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데이터 보관 및 접근 등 10개 항목에 대한 세부 권고내용을 토대로 각국 관계당국이 권한과 책무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방안을 강구하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FSB는 2025년 말까지 동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표 III-3. FSB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최종 권고안 세부 항목

세부 항목
① 관계당국이 적절한 권한과 수단을 보유할 것
②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포괄적 감시·감독체계 마련
③ 규제·감독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④ 책임성 있는 명확한 지배구조 및 운영체계
⑤ 리스크 관리체계 구비
⑥ 데이터 저장과 접근권한 보장
⑦ 회생 및 정리계획 구비
⑧ 투명한 공시
⑨ 상환청구권 부여, 가치 안정화 메커니즘 구비, 건전성 요건 충족
⑩ 운영개시 전 해당국가의 규제·감독·감시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자료: FSB

아울러 BIS CPMI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더불어 2013년부터 26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PFMI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행점검 상설그룹(IMG)을 설립했으며 한국은행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IMG는 최근 IT부문 운영리스크 관련 사이버복원력에 대해 한은금융망을 포함한 28개국 37개 지급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²⁵⁾ 한편 2024년에는 영국 및 EU 대상 2단계 이행평가²⁶⁾가 완료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평가는 2025년 실시 예정이었다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보류된 상태로 평가 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평가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에서는 지급결제인프라 개선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구 현황 등에 관한 각국 사례가 공유되었다. 이에 대해 EMEAP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제기준 부족, 국가 간 규제체계 부조화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아시아 역내에서는 양자간 및 다자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동아시아·태평양 역내국과 관련 연

24) 자세한 내용은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FSB, 2023.7월) 및 <참고 III-3> 'FSB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최종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25) 동 평가보고서는 2022년 11월에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III-4> '사이버복원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을 참조하기 바란다.

26) CPMI-IOSCO는 26개 회원국 중 매년 2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체계의 세부내용과 PFMI 간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BIS CPMI-IOSCO는 2023년 8월 중앙거래당사자(CCP)의 비채무불이행 손실²⁷⁾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²⁸⁾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중앙거래당사자가 PFMI에 따라 충분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비채무불이행 손실에 대해 적절한 대응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중앙거래당사자의 복원력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국제기구 및 관련 국내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 관련 논의 참여

여타 가상자산에 비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플랫폼 등을 통해 지급수단으로 널리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법화 수율을 대체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환매요구가 집중되는 코인런 발생 시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준비자산 투매 등으로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전이되면서 금융안정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²⁹⁾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8월 출범한 「디지털자

산 민·관합동 TF」³⁰⁾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동 TF에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방안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하는 등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3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2024.7.19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동 법률의 위임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위법규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³¹⁾ 동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1단계 입법에 해당하며, 향후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감시체계가 민간의 건전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27) 청산회원 채무불이행 이외의 사건(투자 리스크, 사이버 공격, 보유 담보채권의 평가손실 등)으로 중앙거래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28) 자세한 내용은 「Report on central counterparty practices to address non-default losses」(BIS, 2023.8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29)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이용 확산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FSB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서는 <참고 III-5>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동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30)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로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정부부처(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학계 및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31) 동 법률 및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 III-6> '국내 가상자산 규제 관련 주요 입법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III-1.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장애 발생 현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 IT와 금융 간 융합 확산 등으로 금융거래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통한 지급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IT 시스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전산장애에 따른 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최근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및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전산장애 발생으로 자금이체가 중단되는 등 일반 국민과 금융회사가 불편을 겪었다.

2023년 8월 매일 약 7,200억 파운드를 처리하는 영란은행의 RTGS 방식 거액결제시스템(CHAPS)이 기술상의 문제로 약 6시간 동안 중단되었다.¹⁾

또한 10월에는 일평균 약 12.2조 엔을 처리하는 일본의 소액결제시스템인 전국은행데이터통신시스템(이하 '전은시스템') 장애²⁾로 금융기관의 타행 송금이 2일간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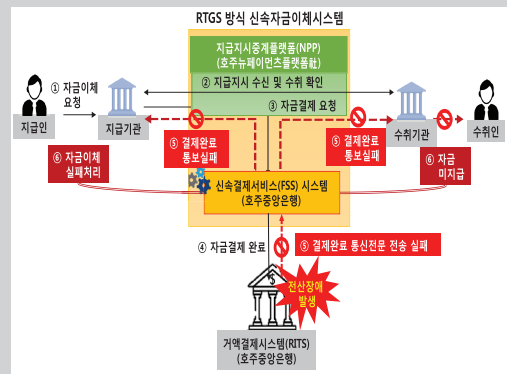
일본의 소액결제시스템(전은시스템) 전산장애 개념도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2년 10월 호주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RITS) 서버 유지보수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³⁾가 발생하여 이와 연계된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⁴⁾인 신속결제서비스(FSS) 시스템과 지급지시 중계플랫폼(NPP)이 약 4시간 중단되었다.

호주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RITS) 전산장애 개념도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전산장애는 개별 금융회사 장애보다 피해 범위와 영향이 훨씬 클 수 있으므로 철저한 운영리스크 관리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 1) 시스템 내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이 사고 원인이며 정상 복구 이후 당일의 시스템 종료 시각을 약 1시간 연장했고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든 내역들을 당일 중 처리 완료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란은행의 「Real-Time Gross Settlement(RTGS) system and CHAPS Annual Report 2022/23」(2023.10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 2) 중계컴퓨터의 시스템(메모리) 용량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전은시스템 보도자료 「전국은행 데이터통신시스템 장애에 대하여」(2023.12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 3) 여러 가상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상의 설정 오류로 전산장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체 「IT 변경 내부통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중앙은행의 「Final Incident Report - RBA Technology Outage on 12 October」(2022.11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 4) 호주의 거액결제시스템(RITS)과 신속결제서비스(FSS) 시스템은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핵심 IT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처리 구조를 보면 지급지시중계플랫폼(NPP)이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를 전송 및 확인한 후 신속결제서비스(FSS) 시스템이 동 지급지시를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거액결제시스템(RITS)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다.

참고 III-2.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확대 동향

애플사의 지급서비스 현황 및 특징¹⁾

애플사(이하 '애플')는 글로벌 1위 간편지급서비스인 애플페이(2014년)를 시작으로 선불충전금을 통한 지급 및 개인 간 송금 등이 가능한 애플캐시(Apple Cash), 일종의 제휴 신용카드(PLCC, Private Label Credit Card)²⁾인 애플카드(Apple Card), 후불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Applepay Later) 등 다양한 지급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어 2023년 4월에는 은행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저축계좌인 애플통장(Apple Savings Account)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들 서비스는 아이폰을 매개로 상호 연계³⁾되어 애플 생태계 내에서 금융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혜택이 극대화되는 구조이다. 애플은 이를 통해 이용자 저변 확대 및 금융서비스 부문의 수익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기존 아이폰 소비자 잠금효과(lock-in effect) 등을 통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애플의 지급서비스 현황

구분	주요 서비스	제휴사	국내 유사 서비스
애플페이(2014)	온·오프라인 지급	은행, 카드사	삼성페이
애플캐시(2017)	지급, 개인 간 송금 등	그린닷은행, 비자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애플카드(2019)	신용카드(PLCC)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네이버-현대카드 등 PLCC
애플페이 레이터(2023)	선구매·후지급(BNPL)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후불지급
애플통장(2023)	저축계좌	골드만삭스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애플의 모든 지급서비스는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빅테크 플랫폼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고객 확보 및 자금 조달 채널을 강화하고, 빅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의 고객을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 매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제휴 유인이 높다.

국내에서는 2023년 3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제휴하여 온·오프라인 간편지급서비스를 개시했다. 향후 애플페이 이외의 여타 다른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도 금융회사와의 제휴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⁴⁾ 이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일정 제약⁵⁾ 하에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 정보·동향자료 - 업무정보'의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2023.5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카드발급사와 제휴사가 단독계약을 맺어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추진하고, 카드 걸면에 카드사가 아닌 제휴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제휴사와 연계된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이다.

3) 애플캐시와 애플카드 등을 애플페이에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애플카드를 애플페이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캐시백이 애플캐시로 적립되며, 이는 애플통장으로 자동이체도 가능하다. 또한 애플통장의 잔액을 애플캐시로 이체하여 지급에 이용할 수 있다.

4)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금산 분리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은행업 인가 취득이 어렵고, 미국 사례에서 금융회사와의 판매채널 제휴 전략이 수익창출에 효과적임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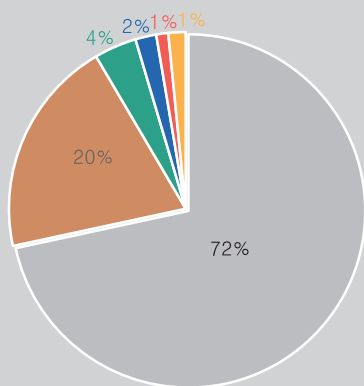
5) 애플캐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로 등록이 필요하고, 애플카드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 PLCC 카드가 활발하게 발급되고 있어 국내 카드발급사와의 제휴를 통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애플페이 레이터와 애플통장은 국내 유사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후불지급,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등과 마찬가지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 계좌 발급수 및 지급한도 등에 제약이 있으며 한시적으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페이팔사의 지급서비스 현황 및 특징⁶⁾

글로벌 모바일 지급 및 송금서비스 업체인 페이팔사(이하 '페이팔')는 2023년 8월 미 달러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인 페이팔USD(이하 'PYUSD')⁷⁾를 출시했다. 이는 미국 내 글로벌 지급·송금 인프라를 갖춘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첫 사례이다. 페이팔 이용자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PYUSD의 매매 및 PYUSD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뿐만 아니라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송금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페이팔이 기존 지급서비스의 외연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으로 넓힌 것은 사업모델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외에도 자체 지급결제 생태계를 확장함으로써 지급서비스 시장 내 지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비중(2024.1월말 기준)

□ USDT □ USDC □ DAI □ FDUSD □ TUSD □ 기타



자료: CoinGecko

다만 PYUSD 서비스가 현재 미국 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PYUSD가 스테이블코인 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은 만큼(2024년 1월 말 기준 0.22%) 단시일 내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⁸⁾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필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및 지급서비스 확장에 대해서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는 긍정적 시각과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심화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IT 플랫폼과 금융의 결합으로 금융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고 있다. 빅테크 지급서비스의 이용이 확대되고 이들 기업으로의 자금이동이 가속화될 경우 빅테크 기업이 지급결제제도과 금융안정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⁹⁾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빅테크 지급서비스의 시스템적 중요성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한 법적 기반, 실행 체계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QR BOX



QR 1

업무정보 「애플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QR 2

업무정보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PYUSD의 거래구조 및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조사·연구 - 정보·동향자료 - 업무정보'의 「페이팔 스테이블코인 PYUSD의 거래구조 및 시사점」(2023.9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 뉴욕금융감독국(NYDFS)의 규제를 받는 신탁기업인 팍소스가 PYUSD의 발행 및 준비자산 관리 등을 담당하며 페이팔은 대고객 채널을 통해 PYUSD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 페이팔의 영업전략,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동향 등에 따라 국내 진출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단계 입법)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 Carstens BIS 사무총장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서비스 규모가 확대될 경우 현행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 인프라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형태의 지급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2021.10월).

참고 III-3.

FSB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최종 권고안 주요 내용

2019년 6월 발표된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G7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은 스테이블코인이 각국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등에 다양한 문제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그 이후 국제기구와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 체계 마련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유발할 수 있는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FSB는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주요 규제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계당국이 적절한 권한과 수단을 보유할 것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감독·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수단·자원을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②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포괄적 감시·감독체계 마련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기능과 리

스크 수준에 맞추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감독·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③ 규제·감독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감독·감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규제 및 감독 결과가 국가별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④ 책임성 있는 명확한 지배구조와 운영체계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수행하는 모든 기능과 활동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중합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고 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⑤ 리스크 관리체계 구비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운영시스템의 복원력 확보, 사이버보안 안전장치 마련,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 수단 구비 등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기능과 활동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주요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⑥ 데이터 저장과 접근권한 보장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데이터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시의성 있는 정확한 보고를 수행할 수 있는 강건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관계당국은 규제·감독·감시 책무 수행을 위해 동 데이터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⑦ 회생 및 정리계획 구비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한 회생 및 정리계획을 갖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⑧ 투명한 공시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과 참가자들이 해당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배구조, 이해상충 요인과 관리방안, 상환청구권,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운영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재무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⑨ 상환청구권 부여,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 구비, 건전성 요건 충족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모든 이용자에게 발행인 및 기초 준비자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제공하고 적시 상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특히 단일 법정통화준거형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1:1 액면가로 상환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상시 안정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명확한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며 건전성 요건도 충족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⑩ 운영 개시 전 해당 국가의 규제·감독·감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관계당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특정 국가에서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그 해당 국가의 규제·감독·감시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규제 요건이 신설될 경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이 역시 적절히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 권고안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에 대해 각국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한편, 국가별 규제체계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그 적용에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허용했다.

참고 III-4.

사이버복원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한국은행은 BIS 및 IOSCO와 사이버복원력(cyber resilience)¹⁾ 대응을 위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BIS CPMI-IOSCO는 2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인 PFMI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CPMI-IOSCO는 이행점검 상설그룹(IMG)²⁾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은행도 참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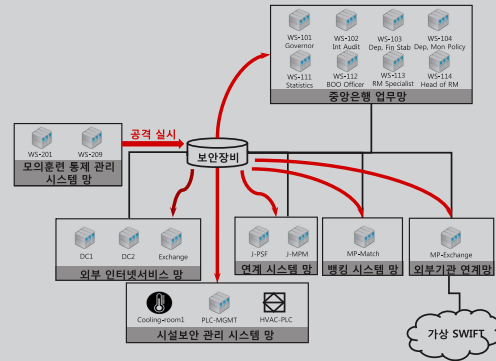
IMG는 IT부문 운영리스크 관련 사이버복원력에 대해 한은금융망을 포함한 28개국 37개 지급결제 시스템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³⁾를 2022년 11월 발표했다.

평가 결과, 일부 시스템이 IT 시스템 장애 발생 후 2시간 이내 운영을 재개해야 하는 PFMI 원칙17(운영리스크)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① 심각한 사이버 공격 발생 시 2시간 이상 업무 재개 시간 소요, ② 시스템의 중요 사항 변경 시 사이버복원력 테스트 미실시, ③ 사이버복원력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응조직의 역할과 책임, 보고체계 등이 미포함, ④ 사이버복원력 테스트에 연계된 다른 기관 및 외부의 중요서비스 제공자(예: 통신, 전력업체) 미참가 등의 이슈가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동 평가의 내용을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BIS는 2023년 7월 중앙은행 간 사이버공격에 대한 지식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사이버모의훈련(cyber range exercise)을 개최했으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9개 중앙은행의 IT 전문가들이 동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BI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공격팀(Red Team)이 모의 해킹 공격을 수행하고 참가 중앙은행 직원으로 구성된 방어팀(Blue Team)이 공격에 대응 및 방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BIS 사이버모의훈련 개념도



자료: 한국은행

훈련 시나리오는 지급결제 데이터 변조, 피싱메일 등을 통한 랜섬웨어 유포, IT 시스템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격팀의 모든 해킹 시도를 방어팀이 성공적으로 탐지 및 차단했다. BIS와 참가 중앙은행은 훈련 종료 후 사고 대응 사례 등과 함께 최신 해킹 기술을 활용한 자금이체 데이터 변조 시도에 대한 사전 탐지 기술, 악성코드의 내부 확산 방지 방안 등을 공유했다.

1) 해킹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시스템 중단, 오류 발생, 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2) 주요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직원과 BIS CPMI, IOSCO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세한 내용은 BIS의 'Implementation monitoring of the PFMI : Level 3 assessment on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Cyber Resilience(2022.11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 III-5.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동향

국제기구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EU·영국·일본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을 마련했으며 미국·싱가포르·홍콩·호주 등은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이다.¹⁾

EU·영국·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EU는 2023년 6월 암호자산시장법(MiCA)의 입법 절차를 완료하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들이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가상자산 규제 입법에 대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개정을 통해 1단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을 완료하고 2023년 8월부터 시행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 및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위한 법령 준비를 마치고 2023년 6월부터 시행했다.

각국 규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경우 은행(EU, 일본) 외에도 전자화폐업자·비은행인가기관(EU), 자금이동업자·특정신탁

회사(일본)에게도 허용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유형²⁾으로, EU는 단일통화준거형과 자산준거형³⁾을, 일본은 법률에 명시한 단일통화준거형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결제자산’으로 명명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통화준거형만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EU, 영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모범 규범으로 평가받는 EU MiCA는 중앙은행인 ECB에게 자산준거토큰의 ① 발행인가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권 및 인가거부(의견제시)권, ② 인가취소요구권, ③ 백서시정조치요구권, ④ 신용기관에 대한 자산준거토큰 발행 금지요구권, ⑤ 자산준거토큰·전자화폐토큰의 발행량제한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EU·영국·일본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의 주요 내용

	EU	영국	일본
관련 법률 및 시행일	MiCA (2024년 7월)	FSMA 2023 (2023년 8월)	자금결제법 (2023년 6월)
발행인	은행, 전자화폐업자, 비은행인가기관	미정 (하위규정에서 규율)	은행, 자금이동업자, 특정신탁회사
유형분류	단일통화준거형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형 (자산준거토큰)	통화준거형 (하위규정에서 규율)	단일통화준거형 (전자결제수단)

자료: 한국은행

1)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4건)이 의회 계류 중이며 현재 입법 절차가 완료되거나 시행 중인 법률은 없다. 홍콩통화청과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을 마치고 최종 추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통화청은 2023년 8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을 준비 중이다. 호주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관한 규제 방안을 담은 ‘지급시스템 현대화 방안’을 발표했고 두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EU, 영국, 일본 모두 ‘스테이블코인’ 대신 자체적으로 명명한 용어를 사용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했다.

3) EU는 자산준거토큰(복수통화, 그 외의 가치나 권리 등에 준거)에 대해 일평균 거래 건수 및 규모가 각각 1백만 건, 2억 유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참고 III-6.

국내 가상자산 규제 관련 주요 입법 내용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7.19일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법화의 규율체계에 따르도록 했다(법률 제2조). 이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법화로서 중앙은행의 독점적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하여 발행되어야 함을 고려한 것이다.

동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하여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했으며(법률 제6조), ②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비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법률 제8조). ③ 또한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법률 제10조, 제17조).

한편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i)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ii) 금융안정, (iii)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했다(법률 제16조).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안)이 2024년 1월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9일 전에 제정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안)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을 세분화했다.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의 공신력과 안전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하여 은행으로 한정했으며,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국채, 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 운용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인터넷과 분리된 안전한 장치(콜드월렛)에 보관하여야 하는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정보의 공개 방법 및 기간을 구체화했으며,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등 금지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전산장애, 사법조사당국의 요청, 해킹 등으로 규정했다.